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결 정

사 건 명 22-학인-00015 폭력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신 청 인 ◎◎◎(○○○ 학생 보호자)

피 해 자 ○○○, △△△, ▽▽▽(□□□□초등학교 4-1학생)

피신청인 ◇◇◇(□□□□초등학교 교사)

주 문

1. 전라북도교육감에게

가. 피신청인이 피해학생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지닌 특성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에게 인권교육을 이수하도록 권고한다.

나.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피신청인에게 전라북도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통한 상담과 치료를 권고한다.

2. □□□□초등학교장에게

폭력에 노출된 학생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구제신청의 개요

가. 접수일자 : 2022. 7. 5.(화)

나. 신 청 인 : ◎◎◎(○○○ 학생 보호자)

다. 피 해 자[1] : ○○○, △△△, ▽▽▽(□□□□초등학교 4-1학생)

라. 피신청인 : ◇◇◇(□□□□초등학교 미술 전담교사)

마. 신청요지

1) 피신청인이 2022년 7월 1일(금) 4교시 미술 수업 시간에 복도에서 교실로 들어가는 ○○○ 학생의 어깨를 때렸음.

2) 피신청인이 2022년 같은 날, 같은 미술 수업 시간에 △△△ 학생의 어깨를 꼬집고 팔목을 잡아끌었음.

3) 피신청인이 2022년 같은 날, 같은 미술 수업 시간에 ▽▽▽ 학생의 팔을 꼬집었음.

---

1) 구제신청 사건(22-학인-00015) 조사과정에서 2022년 7월 1일(금) 4교시 미술 수업시간에 ○○○ 학생 외 △△△, ▽▽▽ 학생도 피신청인에게 피해를 당한 사실을 확인함. 이에 2022년 7월 1일(금), 같은 날, 같은 수업시간에 같은 피신청인에게 피해를 당한 △△△, ▽▽▽ 학생도 이 사건의 피해 당사자라고 판단함.

2. 관련규정

[붙임1] 과 같다.

3. 당사자 주장

가. 피해학생들의 주장

1) ○○○ 학생(4-1, 이하 '피해학생 1.')

2022년 7월 1일(금) 4교시 미술 수업 시간에 복도에서 교실로 들어가는데 피신청인이 손바닥으로 어깨를 때렸다. 제가 피신청인의 가슴을 만졌다면서 어깨를 때렸는데, 한 번도 피신청인을 닿지 않았고, 억울하고 슬펐다. 제가 안 만졌다고 했는데, 피신청인이 "무슨 소리야 만졌잖아"라고 했다.

피신청인이 ▽▽이를 꼬집어서 보라색 멍 자국이 났다.

2) △△△ 학생(4-1, 이하 '피해학생 2.')

2022년 7월 1일(금) 4교시 미술 수업 시간에 클레이를 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이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났는데, 앞으로 나오라고 했다. 제가 싫다고 하니까 어깨를 꼬집고 팔목을 잡아끌었다.

피신청인이 ○○ 뒤에 있었는데 ○○한테 들어가라고 하면서 ○○ 어깨를 딱 때렸다. 교실에 들어와서 피신청인이 ○○가 자기 가슴을 만졌다고 그랬다.

▽▽이도 피신청인이 꼬집어서 빨개졌다.

3) ▽▽▽ 학생(4-1, 이하 '피해학생 3.')

2022년 7월 1일(금) 4교시 미술 수업 시간에 창문으로 나갔다가 들어왔다. 복도에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피신청인이 팔을 꼬집듯이 세게 잡

아당겼다. 3일 동안 멍 자국이 남아 있었다.

피신청인이 ○○한테 가슴 만졌다며 어깨를 때렸다.

△△이가 피신청인에게 말대꾸해서 선생님이 꼬집었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2022년 7월 1일(금) 4교시 미술 시간에 제 가슴을 만진 ○○○ 학생의 어깨를 살짝 한 대 쳤다. 그날, ○○ 고모가 학교를 방문했는데, ○○ 학생이 안 만졌다고 울었다.

2022년 7월 1일(금) 4교시 미술 시간에 △△△이 제가 만들어놓은 부직포 인형 작품을 망가트려서 △△△ 보고 나오라고 했는데, 나오지 않아서 제가 팔을 잡았다.

2022년 7월 1일(금) 4교시 미술 시간에 ▽▽▽은 꼬집은 적이 없다. ▽▽▽ 학생이 수업 시간에 창문을 넘어 다니고 화장실로 쏙 들어가 버리고 그랬다.

2022년 7월 1일(금) 4교시 미술 시간에 나중에 잠깐 교장 선생님이 교실로 올라왔다. 애들은 말을 안 듣고, 창문도 넘어 다니지, 교사의 말은 먹히지도 않지,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얼굴 찌푸리고 있는데 그때 교장이 올라왔다. 그 상황이 꼭 저는, 짜고 치는 그런 게임처럼, 그런 상황을 만들어놓고 옆 반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께 전화하고….

아이들이 담임 선생님 시간에는 안 그러는데, 전담 시간에는 왜 그러는지, 학교에 문제가 있다.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 교대 총장님께 한번 면회를 드리려고 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사실확인서로 작성하지 않겠다.

다. 참고인의 주장

1) 교사 ㅌㅌㅌ(4-1반 담임)

7월 1일, 미술 수업 끝나고 돌아오자마자 ○○가 울먹거리며 교실로 들어왔고, 동시에 애들이 “선생님, 미술 선생님이 ○○한테 내 가슴 만지냐고 했어요.”라고 말하면서 들어왔다.

미술 수업 끝나고 피신청인이 먼저 3명의 애들을 데리고 교감 선생님과 얘기해야겠다고 해서, 저도 같이 가서 3명의 학생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4-1반 학생들이 짓궂기는 하나 제 수업뿐만 아니라 과학 등 다른 전담 시간에 창문을 넘어간다거나 교실 안을 돌아다니는 행동은 전혀 없다.

그날만 그런 게 아니라 교장 선생님이 들어가지 않는 미술 시간에는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돌아다니거나 밖에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자주 있다. 작년부터 그랬다.

민원이 쌓이고 쌓여 이제 교장 선생님이 미술 전담 시간에 들어가게 되었고, 작년에는 담임이 직접 미술 시간에 참관하기도 했다.

6학년이 주로 갈등이 계속 있었고, 사소한 일들은 6학년이 더 많은 것 같다. 그래서 교장, 교감 선생님이 수업에 들어가신 것도 5~6학년 먼저 들어가셨다.

담임한테도 항상 메신저 쪽지로 인성 교육에 힘써 달라고 자주 쪽지를 보낸다. 아이들이 그런 것은 담임 탓이다, 라는 말씀도 한다. 특히, 6학년이 요즘 문제가 있으니 인성 교육을 해 달라고 단체 쪽지를 보내거나, 애들이 난리 치는 것도 결국 담임 탓이다, 이렇게 쪽지를 보낸다.

미술 전담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피신청인에게 재료 준비물을 받으러 가까이 가면 피신청인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받아들였다. 예를 들어, 학생이

피신청인의 어깨를 두드리면 왜 때리냐고 말한 사실을 학생에게 자주 들었다. 피신청인이 “왜 가까이 오냐?”, “왜 때리냐?”라는 말을 했다고 학생들에게 들었다.

평소에는 공격적이지 않으신데 가까워진다거나 하면 공격받았다고 느끼시고 가까이 가면 위협이라고 느끼시는 것 같다.

교대 총장님한테 전화해서 말을 한다거나, 동료 교사와 언쟁이 있을 때는 상대 교사의 이름을 다르게 부르기도 한다.

2) 교장 □□□

피신청인이 맡은 수업 시간은 일주일에 21시간인데,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미술하고 음악을 전담하고 있다.

작년 1학기 조금 지나면서 6월에서 7월부터 민원이 생기기 시작했다. 학기 초에는 주로 담임 선생님 선에서 해결했다. 처음에는 피신청인 수업 시간에 담임교사들이 복도를 왔다 갔다 했고, 또 직접 수업에 들어가기도 했다. 교실에서 소리가 좀 크면 들어갔다가 아니면 복도를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그러다가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자는 의미에서 피신청인의 동의를 얻어서 올해 5월부터는 교감 선생님하고 제가 수업에 번갈아 들어갔다.

6월 말에 피신청인이 저한테 “교장 선생님 이제 제가 잘해볼게요. 그만 들어오세요.”라고 해서, 정말 잘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니까 “잘해볼게요.”라고 했고 복도만 좀 왔다 갔다 해달라고 해서, 그다음부터는 복도를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소리가 나면 또 들어가기도 했다. 그런데 7월 1일은 5, 6학년 학부모 진로 강의 때문에 제가 못 들어갔는데, 그날 4학년

1반 수업 시간에 사안이 벌어졌다.

○○○ 학생 보호자를 비롯한 학부모님들끼리 연락해서 학부모회장, 예전 학부모회장, 운영위원장까지 오셨다.

학생들이 선생님하고 이야기가 잘 안 된다, 답답하다. 친절하지 않다, 선생님 수업 내용을 잘 이해 못 하겠다. 너무 시끄러워서 집중이 안 된다고 했다. 학생들이 여러 번 저를 찾아왔고, 학생회에서도 찾아왔다. 학생, 학부모 회의를 하면 꼭 피신청인 이야기가 나왔고, 교체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수업 내용을 아이들이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이 많다. 이를테면 상세하게 안내하고, 주의점도 여러 가지 도구를 쓰니까 안내하고,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마무리하고, 청소하고 이렇게 해서 끝난다, 계획 하에 진행이 돼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 그게 안 되니까 아이들은 뭘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제가 이번 사안에 대해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못 느끼고 있다가 나중에 시청에서 계속 조사 와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제야 심각성을 느꼈는지 선생님이 112에 신고를 했다.

저한테 아이들 인성 지도를 하라고 하였다. 옛날에는 다 모아놓고 강당이나 큰 운동장에서 인성 지도를 했는데, 교장 선생님은 안 하시냐고, 애들이 통제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담임 선생님이나 제가 인성 교육을 안 해서 그런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

가끔 학생에게 굉장히 과민하게 반응한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다. 학생이 선생님 옆을 지나가면서 스쳤는데 “왜, 너, 나를 때리고 가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

시니까, 학생은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고,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다. 이번에 가슴을 만졌다는 경우도 비슷한 경우이다.

4. 인정사실과 판단

가. 인정사실

위 당사자와 참고인의 주장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신청인은 2022년 7월 1일(금) 4교시 미술 시간에 피해학생 1.의 어깨를 한 대 쳤다.

2) 피신청인은 위 7월 1일(금) 같은 미술 시간에 피해학생 2.의 팔을 잡았다.

나. 판단

1) 총론

「대한민국 헌법」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2조는 신체의 자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제12조 제1항은 학생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 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초·중등교육법」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는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률 등을 살펴보았을 때,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는 존재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는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9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는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초등학교 생활규정 제7조도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규들을 살펴보았을 때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지도할 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허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침해

피신청인은 위 인정사실 1)과 인정사실 2)와 같이 2022년 7월 1일(금) 4교시 미술 시간에 피해학생 1.의 어깨를 한 대 치고, 피해학생 2.의 팔을 잡은 사실을 인정하나, 체벌을 인정하지 않는다. 아울러, 피신청인은 피해학생 3.이 주장하는 피해(팔을 꼬집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학교가 작성하여 교육청에 보고한 <학교폭력 사안보고> 내용, 2022. 7. 6. 4학년 1반 목격 학생 11명[2]이 작성한 <학교폭력 확인서>, 위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학생 1. 피해

2) 4학년 1반 학생은 모두 17명이고, 11명의 학생이 자필로 학교폭력 확인서를 작성하였음.

학생 2. 피해학생 3.의 주장이 사실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2022년 7월 1일(금) 4교시 미술 시간에 피해학생 1.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해학생 2.의 어깨를 꼬집고 팔목을 잡아끌었으며, 피해학생 3.의 팔을 꼬집는 등의 체벌을 하여, 피해학생들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한다.

3) 피신청인의 상황 인식과 낮은 인권 감수성

2022. 7. 1. 4-1 미술 수업 시간에 발생한 사안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의 주장과 피해 학생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피신청인과 피해 학생들의 상황 인식이 다름을 알 수 있다.

먼저, 피해 학생 1.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피해 학생 1.이 교실에서 자신의 가슴을 만졌고, (가슴을 만지고) 조금 후에 , "어디를 만지냐"는 뜻으로 피해 학생 1.의 어깨를 한 대 쳤지만 때린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반면, 피해 학생 1. 은 미술 수업 시간이 끝나기 전에 피신청인이 학급 학생들에게 교실을 나가라고 해서 학급 학생들과 복도에 서 있었는데, 다시 교실로 들어가라고 해서 교실로 들어오던 중 피해 학생 1. 뒤에 서 있던 피신청인이 갑자기 어깨를 때렸다고 주장한다.

둘째, 피해 학생 2.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자신이 만들어놓은 부직포 인형을 망가뜨린 피해 학생 2.에게 나오라고 하였으나 나오지 않아 팔목을 잡아끌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해 학생 2.는 미술 수업시간에 클레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피신청인이 나오라고 했고, 나가기 싫다고 하니까 어깨를 꼬집고 팔목을 잡아끌었다고 주장한다.

셋째, 피해 학생 3.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피해 학생 3.이 창문을

넘어 복도를 돌아다녔고, 피해 학생 3.을 잡으려고 했지만, 화장실로 도망가 잡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해 학생 3.은 창문을 넘어 복도를 돌아다녔는데, 피신청인이 복도로 나와 자리에 앉으라며 팔을 꼬집었고 3일 동안 꼬집힌 멍 자국이 남아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피신청인은 체벌 여부뿐 아니라 체벌 상황 자체를 피해 학생들과 다르게 주장하고 있으나, 2022. 7. 6. 4학년 1반 11명의 학생이 작성한 <학교폭력 확인서>의 목격 진술은 피해 학생들의 주장이 사실임을 뒷받침하고 있어 피신청인이 인식하는 상황과 4학년 1반 학생들이 진술한 상황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피신청인이 피해학생들을 포함하여 4학년 1반 대다수 학생들과 상황을 다르게 인식하는 것은 결국, 피신청인이 학생들과 소통하고 교감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4학년 1반 대다수의 학생 입장에서 볼 때, 피신청인이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이유로 학생의 행동을 지적하는지 납득하기 어려워, 피신청인의 지적 행동을 ”갑자기“ 일어나는 돌발 행동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자신의 행동이 체벌임을 인정하지 않는 원인 중의 하나는 학생에 대한 낮은 인권 감수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피해 학생 1.과 관련하여 어깨를 한 대 쳤지만 때린 것은 아니라는 주장, 피해 학생 2.와 피해 학생 3.과 관련하여 꼬집지 않았다는 주장 등을 살펴보면, 평소 피신청인이 습관적으로 학생의 어깨를 한 대 치거나, 꼬집는 행위를 하여 자신의 행위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으나, 피신청인이 학생의 어깨를 한 대 치거나 꼬집었을 때 학생들이 보인 반응에 관심이 없었다고도 볼 수 있다. 피해 학생 3.의 경우, 피신청인에게 꼬집

혀 3일 동안 멍 자국이 남아 있을 정도라면 꼬집힐 당시 고통이 상당하였고, 피해 학생 3.이 고통을 호소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때도 피신청인이 학생에 대한 인권 감수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할 수 있다.

4)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 침해

4학년 1반 담임교사와 학교 관리자인 교장의 진술을 종합하면, 먼저 피신청인의 수업 시간에 잦은 민원이 발생하였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담임교사와 학교 관리자인 교감, 교장이 피신청인의 수업 시간에 참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피신청인 또한, 자신의 수업 시간에만 학생들이 교실 안팎을 돌아다니고, 수업 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시끄럽고, 피신청인과 학생들과 잦은 언쟁 등으로 민원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피신청인이 담임교사나 학교 관리자의 도움 없이 혼자 수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은 피신청인이 교사로서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교사로서의 신뢰와 권위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신청인이 담임교사나 학교관리자의 도움 없이 수업을 진행하였을 때, 학생들이 교실 안팎으로 돌아다니고, 수업 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시끄럽고, 학생과 학부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은 교사의 수업권뿐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4학년 1반 담임교사와 학교 관리자인 교장이 진술하였듯이

피신청인이 다른 사람이 가까이 다가올 때 위협을 느끼고 상대방을 경계하는 특성이 있다면, 피신청인에게 다가오는 학생들의 행동을 자신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식하거나, 학교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학생들과의 신체접촉을 위협으로 느낄 수 있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즉, 피신청인은 교육활동 중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학생과의 신체접촉을 위협으로 느껴 학생을 경계하는 행동을 취할 수 있고, 피신청인의 이와 같은 특성을 알지 못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피신청인의 경계 행동을 체벌 등의 인권침해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안은 피신청인이 지닌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다. 소결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교육할 때 교사의 교육방법은 교육목적에 맞아야 하며,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이어야 한다. 따라서, 교사가 학생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은 합리화될 수 없으며, 피신청인이 피해학생들을 때리고 꼬집는 등의 체벌을 하여 피해학생들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한다.

피신청인이 피해학생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한 사실은 분명하나, 피신청인이 지닌 특성과 상황 인식 등은 이 사안 판단의 참작 사유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안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을 신분상 처분하기보다는 인권교육 등의 방법으로 교사의 책임을 묻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한편, 피신청인이 학교관리자, 동료 교사, 학생, 학부모가 제기하는 사안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상황 인식이 다른 점, 피신청인이 지닌 특성 등으로 인해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은 점, 무엇보다 피신청인 스스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피신청인이 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피신청인에게 전문기관의 상담 및 진료를 권고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5.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제49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8. 30.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원장 조 기 영 (인)

[붙임1]

관련 법령

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나.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마.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 원칙)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의 인권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만 제한될 수 있으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한다.

③ 학생의 개성과 자율성은 학교생활에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제9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제45조(인권옹호관의 직무) ① 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2.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와 직권조사
3.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과 조치 요구
4.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등의 연구·개발
5.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내용에 대한 공포
7. 학생인권교육
8. 그 밖에 위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

제49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과 조치)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인권옹호관은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후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와 교직원에 대한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권옹호관은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1. 제삼자가 한 조사청구에 대해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조사나 상담이 청구될 당시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조사청구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4. 그 밖에 인권옹호관이 상담 및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인권옹호관이 제2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인권옹호관으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와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인권옹호관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권옹호관의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바. 「전라북도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신적·신체적 질환교원에 대하여 교직수행 가능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한 전라북도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질환교원"이라 함은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장기적·지속적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교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

1.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신분상 조치가 필요한 교원

제10조(심의절차 등) ① 교육감은 질환교원에 대한 사안이 민원, 감사 및 기관장의 요청 등으로 접수되었거나 자체적으로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즉시 해당 부서로 하여금 사실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제2조에 따른 질환교원에 해당되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입증자료를 갖추어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심사결과를 통

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직권휴직", "직권면직" 또는 "교육감 자체처리"로 표기하며, 그 이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심의결과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즉시 관계법령에 따른 휴직을 지시하거나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면직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상 ·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아. 「국가공무원법」

제70조(직권 면직) ①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4.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